

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홍익표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 요 내 용

- 원자력사업자가 「원자력안전법」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
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(안 제10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
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